

2004. 12.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건위원회

# 조 례 안 검 토 보 고

- ①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
- ②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개정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4. 12.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4. 12. 13
- 라. 의안번호 : 제2004 - 62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2004.1.29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7.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기존의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를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기존의 공중화장실외에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정의함(안 제2조)
-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록 하고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군수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경우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 13조)

○ 군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14, 15조)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6, 17조)

○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안 제18조)

###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던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과 예산지원근거, 과태료처분근거 등이 마련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7.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과 표준조례안의 근거에 의거 기존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동 조례의 내용중 일부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위반시 과태료부과를 당하는 등 처분조항이 있으나, 이는 대다수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법률의 근거에 의한 것이며,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2004.11.6 신문등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내용·절차등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액은 100만원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관련사항 위반시 최하 5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하되 최근 1년간 위반횟수를 감안 부과토록 설정한 것은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동 개정조례안의 형식을 보면 개정조문이 2/3이상 차지하는 전부개정 형식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형식으로 제출하였으나, 전부개정의 경우 조례의 제명까지 변형할 때는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로 운영중인 곳은 61개소(간이16, 발효식20, 수거식 22, 수세식3)이며, 개방화장실과 유료화장실로 지정된 사항은 없음.

## 4. 참고자료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 제9조(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제10조(이동화장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제11조(유료화장실)

①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